특 허 법 원

제 5 - 1 부

판 결

사 건 2022허4475 등록무효(상)

원 고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수진

피 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우(담당변리사 최명섭)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7. 14. 2021당12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u>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일/ 지정상품추가</u> 등록결정일/ <u>지정상품추가등록일</u> : 상표등록 제1348010호/ 2017. 7. 26./ 2018. 4. 5./ 2018. 2. 5./ 2018. 3. 19./ 2018. 12. 11./ 2019. 1. 21.
 - 2) 표 장: NET ADVENTURE
 - 3)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피고는 2021. 1.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추가등록 지정상품 중 '모험레포츠시설 설치공사업, 야외훈련시설 설치공사업, 놀이시설 관리업, 놀이터 설치업'(이하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또는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이를 특허심판원 2021당122호로 심리한 후 2022. 7. 14.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 다른 등록무효사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다. 관련 사건의 경과

- 1) 피고는 2018. 12.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7호,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하 '건외 심판청구'라 한다)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건외 심판청구를 2018당4120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20. 3. 10.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건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건외 심결'이라 한다, 갑 제3호증).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4. 9. 특허법원에 건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20허3348), 위 소송 계속 중 2020. 9. 23. 위 법원에 '건외 심결 중 아래 표기재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였으며, 특허법원은 2020. 10. 29. 위 사건을 심리하여 건외 심결 중 '어린이 놀이터용 놀이기구 설치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20후11806), 2020. 12. 21.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20.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

1. 제28류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 정글짐(놀이기구), 운동용 네트

2. 제37류

어린이 놀이터용 놀이기구 설치업, 트렘폴린 시설 설치공사 및 보수업, 트렘폴린

시설 수리업

3. 제41류

영화/쇼/연극/음악 또는 교육훈련용 시설제공업, 레크레이션 목적의 짚라인 시설 제공업, 레크레이션 및 레저활동 조직/제공/준비업, 레크레이션시설 및 서비스 제공업, 트램폴린을 갖춘 실내놀이터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공원 및 유원지운영업, 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조직업, 지도 및 훈련업, 공연장 임대업, 문화적 목적의행사조직업, 교육훈련용 시설제공업, 훈련워크샵 준비/진행/조직업, 교육적 목적의스포츠과학 놀이체험장 제공업,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3) 특허심판원은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1. 2. 22. "상표등록 제1348010호의 지정상품 중 '어린이 놀이터용 놀이기구 설치업'의 등록을 무효한다."는 심결[2021당(취 소판결)14, 갑 제5호증]을 하였고, 위 심결은 2021. 3. 2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확정 심결의 일사 부재리효를 정한 상표법 제150조 본문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 항 제3호 및 제7호.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가 상표법 제150조 본문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150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

해서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같은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같은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건외 심결[이에 대한 취소환송 심결인 특허심판원 2021. 2. 22.자 2021당(취소판결14) 심결을 포함한다]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것이아니므로,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효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다음과 같다.

1)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상표법 제33조 등에 위반되는 경우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의 경우 지정상품마다 별개의 심판물이 된다.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건외 심판청구를 한 2018. 12. 11.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별지 가.항 기재 지정상품들에 관하여만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을 포함한 별지 나.항 기재 지정상품들은 2018. 3. 19.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되어 2019. 1. 21. 등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건외 심결의 심판물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가.항 기재 지정상품이고,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은 건외 심결의 심판물이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정상품이 추가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등록번호가 부여되지는 않는 점, 상표권이 당초 등록일로부터 기산한 존속기간이만료되어 소멸하는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도 함께 소멸하는 점1)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지정상품은 일체로 운명을 같이 해야 하므로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도 건외 심결의 심판물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 및 그 해석, 지정상품 추가등록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 법률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원고는, 건외 심결 단계에서 피고는 2020. 1. 9.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에 대한 무효사유를 분명히 주장하였고, 건외 심결은 이에대하여 판단하였으며, 건외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인 관련 판결 절차에서 피고는 2020. 9. 23.자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은 건외 심결의 심판물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상표법 제125조 제1항, 제2항2)의 문언 및 체계상 청구의 이유가 아닌 청구의

¹⁾ 상표법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①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²⁾ 제125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상표권자의 기재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 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취지의 변경은 허용되는 보정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해석되므로, 상표 등록의 무효심판의 심판물은 그 심판청구 시에 확정되고, 그 후 심판단계에서 지정상 품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청구의 취지 변경을 통한 심판대상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별도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춰보면, 건외 심결의 심판물은 건외 심 판청구 당시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별지 가.항 기재 지정상품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건외 심결의 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을 그 심판대상으로 확장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건외 심결의 심판단계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피고가 건외 심결의 심판단계에서 제출한 서면 중 2020. 1. 9.자 의견서(을 제26호증의 5 제4면 참 조)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별지 나.항 기재 지정상품의 일부가 언급되고 있는 사실 은 인정되나, 이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외 심결의 심결문 제16쪽의 별지 1에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외 심결의 심결문 제2쪽의 제1의 가.항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번호(상표등록 제1348010호), 출원일 (2017. 7. 26.), 등록일(2018. 4. 5.)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과 관련한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일(2018. 3. 19.), 등록결정일(2018. 12. 11.) 및 등록일 (2019. 1. 21.)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건외 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별지 나.항기재 지정상품이 추가등록된 후인 2020. 3. 10.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같은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의 기재는,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원

부의 내용 중 일부가 착오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특허법원에 건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취지 란에 "특허심판원이 2020. 3. 10.자 2018당412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한 사실, ② 2020. 9. 23.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서의 변경 후 청구취지 란에는 "특허심판원이 2020. 3. 10.자 2018당412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별지 1]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했는데 위 [별지 1]에는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관련 판결의 판결문의 별지 2에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2020. 11. 17.자 판결경정 결정(특허법원 2020카허4139, 을 제4호증)에 의하여 위 판결문 별지 2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별지 나.항 기재 지정상품이 삭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건외 판결 절차에서도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은 심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른 특허심판원 2021당 (취소판결)14 심결의 심결문 제12쪽 [별지 1]에는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심결의 심결문 제10쪽에는 관련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와 피고로부터 별다른 주장 및 증거의 제출이 없었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심결문에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이 기재된 것은 건외 심결의 심결문의 별지 기재 내용을 그대로 다시 기재한 오기로 보인다.

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검토결과의 정리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상표법 제150조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등참조).
- 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 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

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3) 한편,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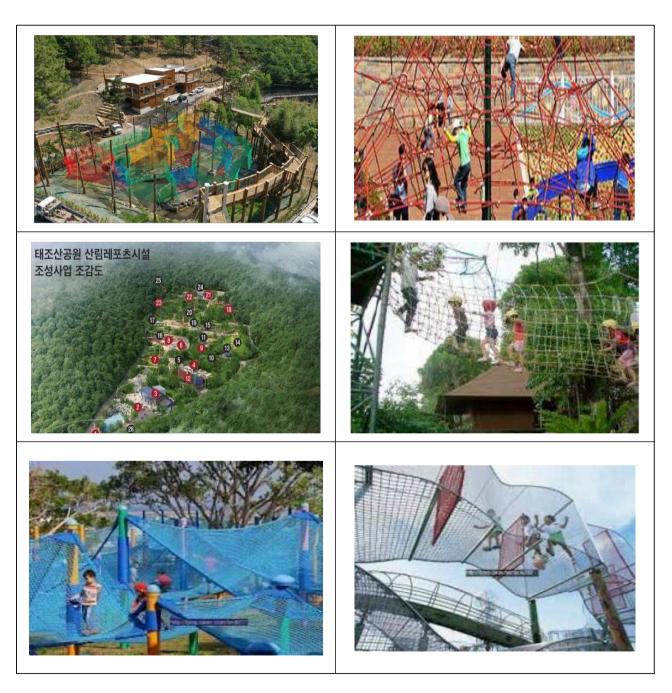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 5, 6호증의 2, 7 내지 13, 15, 20 내지 23,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인 '모험레포츠시설 설치공사업, 야외훈련시설 설치공사업, 놀이시설 관리업, 놀이터 설치업'의 원재료·용도·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상표 및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등록상표 '**NET'ADVENTURE**'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영문자 'NET'와 'ADVENTURE'가 띄어쓰기 형태로 결합한 문자상표로서, 그와 같은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어 문자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여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서는 별도 식별력을 형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

다.

- 2) 'NET ADVENTURE' 중 'NET'의 사전적 의미는 '망사, 그물, 골문, 순(純)' 등이고, 'ADVENTURE'의 사전적 의미는 '모험, 모험심'으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과 관련된 객관적 거래실정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은 위 각 단어가 결합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그물을 이용한 놀이시설 또는 모험시설'이라는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의 등록결정시인 2018. 12. 11. 이전을 기준으로 'A'와 '놀이', '모험'을 포함한 검색어를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 및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A'('어드벤쳐', 'adventure'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상표가 '놀이' 또는 '모험'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현황을 검색한 결과에의하면, 'A' 또는 'ADVENTURE'는 어린이에게 놀이나 모험, 체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에서 '놀이시설 또는 모험시설'을 의미하는 단어로 흔히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 4)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 외에도 '모험레포츠시설, 야외훈련시설, 놀이시설, 놀이터'와 관련된 다수의 업체들이 '네트 A'를 '그물을 이용한 놀이시설 또는 모험시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해 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이 사건 등록상표가 놀이시설 또는 모험시설에 관한 지정상품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할경우 '그물을 이용한 놀이시설 또는 모험시설' 또는 그 제공을 위한 서비스업에서 시설물이나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 또는 영업의 내용을 표기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

①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의 등록결정시인 2018. 12. 11. 이전을 기준으로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네트'와 '모험레포츠시설, 훈련시설, 놀이시설, 놀이터' 중하나를 포함하는 검색어를 각각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그물을 이용한 모험레포츠시설, 야외훈련시설, 놀이시설, 놀이터의 이미지가 다수 검색된다.







②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의 등록결정시인 2018. 12. 11. 이전을 기준으로 원고 외에 'F'라는 업체에서 실내 그물 놀이터를, 'G'라는 업체에서 그물 놀이시설을, 'H' 이라는 업체에서 그물을 이용한 시설물을, 'I' 업체에서 그물로 된 터널 놀이시설물을 이미 '네트 A'(또는 어드벤쳐네트)로 소개하고 있었다.





- ③ 원고 역시 그의 홈페이지에서 '네트 A'를 2008년 프랑스의 한 요트선수이자 어부가 그물을 활용하여 창안해 낸 숲속 모험시설로 소개하는 한편, A 시설의 한 종류 로 분류하고 있다.
- ④ 원고는 2017. 4. 7. 조경기술사사무소 'J'으로부터 '관악산 청소년 체험의 숲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A 시설 업체 선정에 '네트 A' 시설을 배치할 것을 내용으로 한 제안서를 요청받았고, 원고와 피고가 입찰한 후 2017. 5. 12. 관악구청에서 진행된 사업제안 심의에서 '네트 A'라는 용어가 그물을 이용한 A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피고는 2017. 8. 5. 네덜란드 K 회사에 'Net adventure' 사업 발주를 하였다.
- 5)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물을 이용한 놀이시설 또는 모험시설과 관련하여 'NET ADVENTURE'를 접할 경우 그 놀이시설 또는 모험시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로 인식할 것이어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검토결과의 정리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33

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2항 제12호 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우성엽

판사 김기수

[별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가. 등록당시 지정상품(2018. 4. 5. 등록)

-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육상/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수송기계기 구의 동작 제어용 낙하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보트, 공기팽창식 래프팅보트, 경비행기, 케이블카, 트램, 여객열차, 레저용 이륜모터바이크, 레저용 이륜모터차량, 자전거, 레저용 전동핸드카, 어린이용 소형차, 수송기계기구용 타이어, 수송기계기구용 완충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장치, 육상차량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체조 및 스포츠용품, 유원지용 기계기구, 유원지용 탑승놀이 기구, 오락용구 및 장난감, 스포츠용구(등산용구/골프용구는 제외), 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용 오락장치, 정글짐(놀이기구), 조립식 놀이집, 원격조종 축소모형차량, 오락용 눈썰매, 오락용 킥보드, 등강기(등산장비), 낚시용구, 그네(스포츠용품), 운동용 네트, 수상스키, 수상스포츠용 보드, 인라인스케이트
- 상품류 구분 제37류의 어린이 놀이터용 놀이기구 설치업3), 트램폴린 시설 설치공사 및 보수업, 트램폴린시설 수리업, 스포츠 및 피트니스장비 수리 및 관리업, 스포츠기계 및 기구 설치업, 오락기계기구 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워터슬라이드 설치업, 워터슬라이드 유지관리업, 장난감 수리 및 관리업, 체조 및 스포츠용품 수리 및 관리업, 텐트 설치업, 수송기계기구 관리/정비/수리업, 요트 및 보트 개조/수리 및 수리업, 워터슬라이드용 보트 설치업, 워터슬라이드용 보트 유지관리업, 화재피난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업, 자동판매기 설치업, 선박/요트/보트/배/수상 운송기계기구 건조감독업

³⁾ 특허심판원 2021. 2. 22.자 2021당(취소판결)14 심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정상품이다.

-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영화/쇼/연극/음악 또는 교육훈련용 시설제공업, 레크레이션 목적의 짚라인 시설제공업, 레크레이션 및 레저활동 조직/제공/준비업, 레크레이션시설 및 서비스 제공업, 장난감 스쿠터 대여업, 트램폴린을 갖춘 실내놀이터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공원 및 유원지운영업, 디지털사진촬영업, 파티계획업, 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조직업, 지도 및 훈련업, 쇼 및 스포츠행사 좌석예약업, 공연장 임대업, 문화적 목적의 행사조직업, 교육훈련용 시설제공업, 훈련워크샵 준비/진행/조직업, 교육적 목적의 스포츠과학 놀이체험장 제공업, 수상스포츠시설의 운영업,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나. 추가등록 지정상품(2019. 1. 21. 등록)

- 상품류 구분 제37류의 건설업, 모험레포츠시설 설치공사업, 야외훈련시설 설치공사업, 자동조종기계 유지관리업, 자동조종기계 수리업, 자동차 원격시동장치 설치업, 자동차 원격시동장치 수리업, 놀이시설 관리업, 놀이터 설치업, 자동차 튜닝업, 동력기계(육 상차량용은 제외)의 설치/수리 및 보수업, 건축물조립공사업, 건축장치물설치공사업, 구조물해체공사업, 난간시공업, 목공사업, 목조주택건축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종합건설공사업, 통나무주택 건축업. 끝.